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

2022.07.29

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㈜(이하 "회사")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교류차단 및 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조치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.

I. 정보교류차단 대상 설정 및 운영

가)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
① 법 제 17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③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나) 정보교류차단 대상 제외 정보

-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
 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 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
-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
 ① 부동산(지상권・지역권・전세권・임차권・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 ②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

II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설정

가)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과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 간

나)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집합투자재산 직접판매 간

다) 회사와 계열회사 등 간

III. 이해상충방지 조치

가) 상시적 정보교류차단: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, 이해상충의 정동 등을 감안하여 정보차단벽을 설치·운영

① 사무 공간의 분리
②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
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·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
④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·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·운영

나) 예외적 허용

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음.

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분 중 감사, 인사, 회계, 재무, 경영지원, 경영분석, 상품개발, 전산, 결제, 법무,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음. 단,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, 부당정보 이용금지,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함.

다) 계열회사 등 제 3자에 대해 정보차단벽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.

IV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목록

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

V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가)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

① 집합투자기구와 계열회사 간 거래
②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③ 하나의 최종 투자대상자산 또는 프로젝트에 회사가 운용하는 두 개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
④ 하나의 최종 투자대상자산 또는 프로젝트에 집합투자기구와 고유재산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
⑤ 그 밖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

나) 대응방안

①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.
②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관련 거래를 하여서는 안됨.

VI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가)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.

나)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.

다)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 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.